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2139

제안연월일 : 2020년 3월 3일

제 안 자: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일부 자구 및 부칙 중 시행일을 상위법과 맞게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"복지시설의료기관"을 "복지시설·의료기관"으로 함(안 제8조의2제2항).
- 부칙을 "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"로 함(안 부칙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안 제8조의2제2항 중 "복지시설의료기관"을 "복지시설·의료기관"으로 한다. 안 부칙을 "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"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〈신 설〉</u>	제8조의2(순회교육·원격교육 실	제8조의2(순회교육·원격교육 실
	시) ① 교육감은 장・단기 결	시) ① (개정안과 같음)
	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	
	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	
	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	
	<u>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	
	②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	②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
	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	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
	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	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
	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	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·의
	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	<u>료기관</u>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
	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	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
	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	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
	실시하여야 한다.	실시하여야 한다.
	부 칙	부 칙
	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<u>공포한</u>	이 조례는 <u>2021년 4월 21일</u> 부터
	<u>날</u> 부터 시행한다.	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순회교육·원격교육 실시) ① 교육감은 장·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·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 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제8조의2(순회교육·원격교육 실시) ① 교육감은 장·단기 결석이 불가 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・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	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
	<u>행한다.</u>